가고싶은 학교 공동체 군산서흥중학교

| <학교생활목표><br>서로 도와 우애하고 슬기롭게 배우자 | 가정통신문 | 군산서흥중학교<br>☎ 460-0727 |
|---|---|---|

## 2021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1차고사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 코로나19 상황별 대처 방안 및 지필고사 인정점 부여 기준 ◈

※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음.
※※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 또는 별도 운영계획 등에 기준을 정하여 결정함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처리 등 | 인정비율 |
|---|---|---|---|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br>◦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br>◦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br>◦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결석<br>◦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 **의심증상학생** |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 진단) | ◦출석인정결석<br>◦별도 시험실 미제공 | 100%※※※ |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학생인 경우 등교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지필평가 인정점 산출식 - *예시*]

$$\text{최종 인정점} = \text{기준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인정점 부여비율}$$

| 과목 | 기준고사(1차고사) | | 결시고사(2차고사) | 최종 인정점 |
|---|---|---|---|---|
| | 평균 | 기준점수 | 평균 | |
| 수학 | 68.0 | 65 | 62.3 | 47.64 |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1.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
2.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참고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과목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과목(교과)의 성적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2차 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
3. 3.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가.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나. 전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다. 동일 과목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라. 동일 학기의 전과목 평균 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마. 선택과목이 서로 다른 경우 동일 과목으로 인정하여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

2021. 4. 19.

**군산서흥중학교장**<직인생략>